

하남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 남 시 의 회

하남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587
----------	------

발의연월일 : 2023년 1월 20일

발의자 : 박진희 의원

1. 제정이유

하남시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 생활 등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안 제5조)
- 라.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6.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1. 27. ~ 2. 2.

나. 의견 내용 : 의견없음

하남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하남시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시장은 느린학습자에게 평생교육의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느린학습자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2. 12. 27.>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22. 12. 27.>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7.>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신설 2016. 2. 3., 2022. 12. 27.>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2023. 01. 05. 현재)

연 번	자치단체명	법 규 명	제 · 개정 일	소관부서	비 고
1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	2021-11-09	청년담당관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	2021-12-30	생활복지국 교육지원과	
3	경기도 오산시	오산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2-05-13	복지교육국 평생교육과	
4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2-10-31	경제문화농업국 교육체육과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	2022-11-10	행정지원국 교육지원과	
6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2-12-23	경제문화국 평생교육과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	2022-12-30	복지교육국 교육지원과	